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문진석의원·황운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225 발의연월일: 2025. 4. 29.

발 의 자:문진석・황운하・이건태

서영석 • 윤종군 • 김동아

조인철 · 문정복 · 이연희

김기표 · 김태선 · 이상식

안호영 · 정진욱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·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. 이러한 사회적·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·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.

이에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조세정책이 소득·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0조의2제2항제5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2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조세정책이 소득 · 자산의 재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0조의2(중장기 조세정책운용	제20조의2(중장기 조세정책운용		
계획의 수립 등) ① (생 략)	계획의 수립 등) ① (현행과 같		
	음)		
②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	②		
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			
되어야 한다.			
1. ~ 4. (생 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		
<u> <신 설></u>	5. 조세정책이 소득ㆍ자산의 재		
	분배에 미칠 영향과 그 근거		
<u>5.</u> (생 략)	<u>6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		
③ ~ ⑤ (생 략)	③ ~ ⑤ (현행과 같음)		